

#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(강선영의원 대표발의)

## 검 토 보 고

### I. 주요내용

- 「방위사업법」에 국방기술품질원이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 받는 경우 그 기간을 20년 이상 장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별 표 제76호).

### 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(주서본 참조).

(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)